

#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4.(수)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23. 5. 1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23. 5. 19.
- 라. 상정일자 :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3년 6월 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구호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함.(안 제2조)
    - (현행) 자연재난 ⇒ (개정) 자연 + 사회재난
  - 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 구호기준, 회계관리,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개정안의 개요

- 재해구호기금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이재민의 구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기금임.
- 인천시는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음.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알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재해구호사업”의 정의 근거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로 확대 적용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 안 제4조는 기금의 지원 범위를 나열한 것에서 기금의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임.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제1호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금과 생계 보조금’ 이 제외되었는데, 개정안 인용조문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그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에 해당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 (안 제7조~제10조) 기금의 회계관리

- 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는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관리,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임.

####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재해구호 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떤 확대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재해구호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소래포구 화재,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사고에 지원할 수 있었음. 법은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이제야 개정하는 사항임.
-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사회재난이다 아니라 말이 많은데, 사건에도 재난 구호기금이 지원되는지?

- ⇒ (시민안전본부장) 전세사기는 특별법으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지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원되는 규모는?
- ⇒ (시민안전본부장) 행안부에서 고시한 금액과 별표 규정에 맞춰 지원이 됨. 송현시장 같은 경우도 규정에 의해 상가당 200만원이 지원되었음.
-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나와있는데 규정보다 더 많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 (시민안전본부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사회재난으로 할 수 있고 재량권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올해도 침수피해나 호우, 폭우 피해가 날 수 있는데,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안 제4조제1호 별표 사항을 삭제하는데 삭제로 인해 지원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 ⇒ (시민안전본부장)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상관 없음.

##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 나. 반 대 : 0명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를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 중 ““재해구호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을 ““재해구호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 ----- ----- --.</p>
<p>제2조(정의) “재해구호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재해구호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 ----- -----.</p>
<p>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li> <li>2. (생략)</li> <li>3. 기타 수입금</li> </ol>	<p>제3조(기금의 조성) ----- ----- --- 다음 각 호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제15조에 따른 -----</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그 밖의 --</li> </ol>
<p>제4조(기금의 용도) 재해구호사업</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p>

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  
금과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  
품의 지급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응급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
6.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  
에 필요한 제반 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인  
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구호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시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시  
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  
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 적립계좌를 설치  
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  
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삭 제>

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인  
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  
-----  
-----.  
② ----- 제3조에 따라 -----  
-----  
-----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본부장
- 2. 기금출납명령관 : 재해구호업무담당과장
- 3. 기금출납공무원 :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

-----  
---.

③ -----  
----- 그 밖  
에 -----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 제>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삭 제>

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삭 제>